

신혜원의 가정법 산책 >> 글보기
간통

lawhwshin on June 22, 2011

얼마 전에 한국 내에서 '간통죄가 식물형벌 되다'라는 기사 보도(fn1)가 있었다. 미국에 사는 한인 이혼 사례에서도 간통에 대한 문의는 끊이지 않는다. 간통의 피해자 입장에서든, 간통을 저지른 사람의 입장에서든.

한국 대검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간통 혐의로 구속된 사람은 2004년 569명에서 2008년 10명으로 급감했다. 간통 사건 수사 및 처리 기준에도 변화가 있다 한다. 한 예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구속 수사가 원칙이었는데 최근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란다. 따라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배우자의 불륜 현상이 포착되면 112 신고를 해 경찰관과 함께 배우자와 그 상대방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었으나, 요즘은 이혼재판 청구소송 신청서와 함께 정식 고소장을 접수시켜야만 경찰관 출동이 가능하단다(fn1). 결국 쇠고랑을 채우거나 차는 찰나에 부부의 연은 돌이킬 수 없이 끊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가정법은 이혼에 이르게 된 과실이나 책임 사유를 묻지 않는 'No Fault Divorce Laws'이다. 법원에 제출하는 이혼 신청서에는 이혼 신청에 대한 이유로 두 가지 Check Box를 열거하고 있다. 첫째, Irreconcilable Differences (화해할 수 없는 차이), 둘째, Incurable Insanity (불치의 정신병)이다. 나를 찾는 거의 대부분의 의뢰인은 적어도 이혼 신청서를 작성 하는 순간에는, 배우자가 두 번째 경우, 불치의 정신병자라 한다. 그러한 주장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약물 치료 등의 의학적인 증거를 물음라치면 모두 조용해지고 일 처리가 빨라진다.

하지만 아무리 미국이 성적 개방과 문화에 있어서 한국보다 개방된, 더 나아가 문란한 나라라고는 하나 캘리포니아 주가 'No Fault Divorce Laws'를 입법화한 것은 1969년에 불과하다. 아직 50년도 채 안된 법의 혁신이라 하겠다. 이혼에 대한 과실,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법의 전제로 하니 바람피우고 간통을 저지른 입장에서든 Irreconcilable differences를 근거로 결혼이 돌이킬 수 없이 파손되었음을 주장하면 상대방 배우자의 동의 없이도 이혼이 성립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열녀문 세우던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알았던 시절에서 이혼율이 50%를 넘나드는 날이 한국에 도래했으니, 간 떨어던 간통이 유아무야한 '식물형벌'로 도태함도 시대 변천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이 아닐까 싶다.

법이야 뭐라고 떠들든, 미국에 사는 한인 부부들은 아직도 우리 한국의 정서와 전통에 발상한 '각서'를 많이 쓴다.

H와 W는 달콤한 연애 끝에 결혼에 성공했다. 하지만, H는 결혼 5년차에 다른 여자를 슬쩍

슬쩍 품다가 W에게 딱 걸려 버렸다.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자신은 아무 생각 없었는데 여자가 하도 들러붙는 바람에 그만 술김에 실수였다고 혼절하도록 빌어대는 H를, 경제적으로 능력도 있고 장래성도 있고 해서 W가 못 이기는 척 눈 감아 준다. 하지만, 열녀문 시대가 아니고 마누라도 남친을 키우는 시대라 그냥 봐 줄 수는 없다. W는 H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쓸 것을 요구한다.

‘만에 하나 다시 한 번 H가 마누라 이외에 다른 여자와 성 관계를 갖고 또 이것으로 인해 이혼으로 끝날 경우, 법이 부여하는 재산권을 비롯한 모든 권리는 이의 없이 보장하고, 거기에 하나 더 얹어서, H가 W에게 입힌 상처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 보상으로 H는 W에게 \$200,000을 지급한다...’

당장 이혼만 아니라니 앞뒤 재지 않고 H는 ‘OK, OK’를 연발하고 손가락까지 깨물어 혈서로 각서에 사인했다.

그 후 1년이 지나, H의 완전 범죄 시도는 또 실패하고 급기야 W는 H를 이혼 법정에 세우고 정신적 피해 보상액 \$200,000을 청구한다. 안 그래도 양육비에, 배우자 생활비에, 변호사비에, 있는 재산도 모두 다 나누라니... 얼마 전까지 같이 놀던 여친도 며칠 짜 전화를 안 받고. H는 죽을힘을 다해 각서가 무효라고 협박했다, 빌었다를 반복했다.

이에 판사님은 부부간에 혼외 정사에 대한 벌칙으로 금전적인 피해 보상을 하기로 동의한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가정법의 원칙, ‘No Fault Divorce Laws’라는 법의 정신에 반대되는 내용이므로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판결 내렸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고 싶은지... 촌스러운 티 안내고 쿨(Cool)하게 변화(Change)를 수궁해야 하는지,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사람의 도리가 있는데 설사 가진 재산 다 털어주더라도 도의적인 책임은 저야지라고 한 말씀 하시려는지.....

fn 1: 중앙일보, 미주 중앙일보, 2009년 7월 15일 자 기사, [사회 프런트] 101년 된 간통죄 ‘식물형벌’되다. (끝)

*본 기사의 저작권은 신혜원이 소유함을 명시합니다.

** 위의 기사는 본 변호사와 관련된 특정 의뢰인의 실제 사례가 아니며, 본 기사를 위하여 가상인물 및 상황을 설정, 사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